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494호

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·폐합하는 내용으로 「물류정책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86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(현행 제9조 삭제)

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·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

나. 신설된 ‘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’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(안 제13조의2)

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·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‘녹색물류

협의기구'와 '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'를 폐지하되,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'국가물류정책위원회' 내 '전문위원회'로 두는 방식으로 통·폐합

다. 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(안 제14조)

라. '녹색물류협의기구' 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(현행 제48조의2 삭제)

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·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

마. 업무위탁 규정 정비(안 제51조)

종전 '녹색물류협의기구'를 '녹색물류전문위원회'로 변경하고, 법령 조문 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(물류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601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

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물류정책  
과(전화 044-201-3996, 39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